명 도 확 인 서

사 건 번 호

이　　름

주　　소

위 사건에서 위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매수인(낙찰인)에게 목적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첨부서류 : 매수인(낙찰인) 명도확인용 인감증명서 1 통

20　　.　　.　　.

매수인(낙찰인)　　(인)

(연락처 :　　)

지방법원　　귀중

☞ **유의사항**

1) 주소는 경매기록에 기재된 주소와 같아야 하며,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이어야 합니다.

2) 임차인이 배당금을 찾기 전에 이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, 매수인(낙찰인)과 임차인 간에 이사날짜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신뢰할 수 있다면 임차인이 이사하기 전에 매수인(낙찰인)은 명도확인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.